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일 : 202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전통 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항목 신설(제3조제2항)

나.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규정 신설(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제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3. 26. ~ 2025. 4.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475호, 안전교통과-29749(2025. 3. 26.)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4936(2025. 3. 28.)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4936(2025. 3. 28.)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2366(2025. 3. 3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6067(2025. 4. 1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6249(2025. 4. 18.)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하여”를 “감면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별표 1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순세입의 감소 = 방문객 수 × 주차요금(30분)
 - 방문객 수: 월 1,600명(2025. 1. 기준) * 매년 10% 증가 가정
 - 주차요금: 700원(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1급지·대형차 기준)
 - (2025년) 1,600명 × 12개월 × 700원 = 13,440천원

<비용추계 결과>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방문객 수(명)	19,200	21,120	23,232	25,555	28,110
주차요금(원)	700	700	700	700	700
합계(원)	13,440,000	14,748,000	16,262,400	17,888,500	19,677,000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 330 - 2019